

의안번호	2126630
의 퇴 인	김진표 의원
회 답 일	2024.05.03.
추 계 번호	24C0234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디지털기반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보급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조 2,835억원, 2029년 6,834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조 1,259억원(연평균 1조 252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 ‘AI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정책’은 제정안 발의 전에 추진되고 있던 정책이나, 제정안 시행으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지속·안정적으로 추진가능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예산계획을 근거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함
 -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재원이 총액으로 결정되는 만큼 특별교부금으로 소요될 ‘디지털교과서 개발 예산 등’이 총 재정수요를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국고 및 지방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진행(예정)될 금액을 추가재정소요로 계상함¹⁾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디지털기반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6조)	32.8	2.8	2.8	32.8	2.8	74	14.8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등(안 제10조 등)	1,283,456	1,074,756	1,476,469	607,741	683,441	5,125,863	1,025,173
합 계	1,283,489	1,074,759	1,476,472	607,774	683,444	5,125,937	1,025,187

- 주:1) ‘AI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정책’은 제정안 발의 전에 추진되고 있던 정책으로 필요 예산 중 일부가 '24년 예산에 기편성되어 있어 AI디지털교과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제정안에 따른 필요·직접적 추가재정소요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동 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향후 예산을 소요하면서 지속·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예산계획을 근거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함
- 2) ‘디지털기반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구용역비를 추계한 값으로 가정이 변동될 경우 결과 값은 변경될 수 있음
- 3)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등’은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사업 중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지원,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인프라구축(일부), 교원연수 등’ 특별교부금으로 추진 예정된 사업의 소요 예산안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증액 교부가 실시되거나 사업계획이 변동될 경우 등에는 추가재정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
- 4) ‘AI디지털교과서 보급비’가 불포함된 값이며 향후 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금액은 검정심사 이후 확정되므로 현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다만, 이 경우에도 ‘디지털교과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증액교부금이 실시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할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의 기본원칙)	(제1항) 디지털기반교육은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추진되어야 한다. (제2항) 디지털기반교육은 지능정보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추진되어야 한다. (제3항) 디지털기반교육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언어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추진되어야 한다. (제4항)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교수자로서의 교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5항) 디지털기반교육은 「초·중등교육법」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과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교육 혁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기반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평등하게 디지털기반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디지털기반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기반교육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 교과서의 콘텐츠 및 기술의 안정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습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 보호·관리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및 지능정보기술 등이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기반교육 정책의 추진과 교원의 디지털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필요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6조 (디지털기반교육 기본 계획의 수립 등)	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항)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후 제2항에 따른 디지털기반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디지털기반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생의 부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학교의 장, 교원 등 정책관계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기반교육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기반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기반교육 정책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교과서의 개발·보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학습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원에 대한 연수·지원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디지털기반교육 정책의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디지털기반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항)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항)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4	안 제7조 (디지털기반교육 실시 계획의 수립 등)	(제1항)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디지털기반교육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감은 전년도 실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실시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그 밖에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8조(실태조사)	(제1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디지털기반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지털기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의 장, 개발사 및 디지털기반교육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의무규정
	안 제9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3항)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과 해당연도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7	안 제10조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제1항)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 교육감, 교원,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개발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준수하여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8	안 제11조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및 검정취소)	(제1항) 디지털교과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은 개발사 또는 디지털교과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디지털교과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개발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디지털교과서의 내용, 체제, 사용환경, 주요기능 등을 제12조에 따른 품질관리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한 때 3. 그 밖에 디지털교과서를 존속시키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재량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9	안 제12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점검 등 품질관리)	텔교과서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교과서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개발사는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항)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디지털교과서 또는 네트워크 오류 등 오작동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관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감, 학교의 장, 개발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6항) 제1항에 따른 점검,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와 제5항에 따른 위탁 및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0	안 제13조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항)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하여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학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합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제2항 전단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항)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5항)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개발사는 통합정보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량규정
		(제6항)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항) 개발사는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습데이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8항)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안 제14조 (학습데이터의 처리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과 디지털교과서의 학습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기술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학습데이터 관리·운영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네트워크의 분리, 보안인증기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개발사는 학습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항)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개발사는 학습데이터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규정
		(제4항)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이하 “가명처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연구·분석 2.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별화·맞춤형 학습 지원정책 마련 3. 디지털기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정책 마련 4.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기반교육 정책의 기획·집행 및 평가 (제5항) 교육부장관은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처리한 학습데이터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데이터를 제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16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송 요구)	공받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항) 교육부장관은 균등한 개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학습데이터를 개발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데이터를 제공받은 개발사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항) 개발사는 학습데이터(가명처리된 학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디지털기반교육 및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운영·고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범위·방식으로만 처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디지털기반교육과 무관한 개발사의 자체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항) 학습데이터의 보유기간은 보유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해당 기간 이상으로 보관하기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제9항) 개발사는 학습데이터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항)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학습데이터의 수집·이용·처리·보유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제1항)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학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감, 학교의 장, 교원 및 개발사는 제1항의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13	안 제17조	(제3항)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개발사에 대하여 각각의 주체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있는 해당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데이터를 전송받은 사람은 전송받은 학습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량규정
		(제4항) 제3항에 따른 요구·전송 대상 학습데이터의 범위, 요구·전송의 방식과 절차 및 제3자 제공 금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3	안 제17조	(제1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디지털기반교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디지털기반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2.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콘텐츠의 개발·보급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디지털기반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의 확보·유지관리 4. 그 밖에 학교의 디지털기반교육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또는 교구·장비 및 시설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4	안 제18조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제1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 기반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이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사회·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협력할 수 있다. (제4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디지털기반교육 교수학습 활동 성과가 뛰어난 교원 및 학교를 각각 선도교원 및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포상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항) 교원의 임용권자는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연구 및 교수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을 교육행정기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6항)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 제2항에 따른 연수, 제3항에 따른 협력, 제4항에 따른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파견근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5	안 제19조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개발사 등 지원)	교육부장관은 디지털기반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개발사 등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공교육 활성화 기여 수준 등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16	안 제20조 (디지털 생활 지원 대책 수립)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디지털기기 및 지능정보기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술 등이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디지털 생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책 수립 업무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분석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7	안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재량규정
18	안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디지털교과서에 보관된 학습데이터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한 자 2.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디지털교과서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이용한 자 3. 제15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의무규정
19	안 제24조(과태료)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또는 거짓으로 진술한 자 4.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2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의 기본원칙) 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정안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의 기본원칙과 디지털기반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구체적 사항이 동 법의 다른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계에서 제외
2	안 제6조 (디지털기반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안 제7조 (디지털기반교육 실시계획의 수립 등)	×	· 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23년과 '24년 시도교육청별 주요 업무 계획에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과 안 제6조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실시계획이 수립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에서 제외
4	안 제8조(실태조사)	×	· 제정안에서 디지털기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현시점에서 관련 소요예산 예측에 한계가 있음 · 다만, 교육부가 '23년과 '24년에 실시한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조사와 유사한 규모 및 내용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약 750만원에서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할 것으로 예상됨 ²⁾
5	안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	· 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기 위한 인쇄비 등이 소요될 수 있으나 부처의 기본경비내에서 충당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함
6	안 제10조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안 제11조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및 검정취소) 안 제12조(점검 등 품질관리)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안 제13조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안 제14조 (학습데이터의 처리 등) 안 제16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송요구) 안 제17조 (디지털기반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안 제18조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안 제19조 (디지털기반교육을 위한 개발사 등 지원)		
7	안 제20조 (디지털 생활 지원 대책 수립)	×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에 대한 디지털 생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소요가 유발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³⁾⁴⁾
8	안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	·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업무 중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에 위탁할 경우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주요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현시점에서 관련 소요예산 예측에 한계가 있음
9	안 제23조(벌칙) 안 제24조(과태료)	×	· 제정안에 따라 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재정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의 위반 횟수 및 금액규모 등을 예상하는데 한계가 있음

- 2)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교육현장의 에듀테크 활용현황과 분석’(‘23.6.실시, 예산 750만원), ‘초·중등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23.10~11, ’24.7~9, 예산 약 4,500만원), ‘KERIS 원격강좌 현황조사’(별도 예산 없음) 등을 실시함
- 3) 참고로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의 최신 SW·AI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학습·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사업(’24년 기준 915억원 특별교부금 편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책 수립업무 위탁사업비로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의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디지털 기기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생활 지원 대책이 교육청 단위 등에서 실시될 경우 등에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구체적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지 않음
- 4) 참고로 2024.3. 교육부는 안 제4조제5항과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디지털기기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 ‘디지털 교육 규범’의 시안을 수립하였으며, 동 규범의 수립 비용과 유사한 규모로 안 제20조에 따른 위탁이 실시 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탁 내용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교육청 단위의 위탁사업이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구체적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지 않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①디지털 기반교육 실시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②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등(안 제10조·안 제11조·안 제12조·안 제13조·안 제14조·안 제16조·안 제17조·안 제18조·안 제19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⁵⁾

○ (안 제6조) 제정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디지털기반교육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기반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본 추계서에서는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회’와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정

○ (안 제10조 등) 안 제10조·안 제11조·안 제12조·안 제13조⁶⁾·안 제14조⁷⁾·안 제16조·안 제17조·안 제18조·안 제19조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 개발과 운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 본 추계서에서는 '24년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 예산으로 추정⁸⁾

－ (안 제12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안 제12조제5항에 따라 동 조 제1항(점검) 및 제4항(사후관리) 등의 업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할 예정

－ (안 제16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발사로 하여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트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 등급 이상을 획득하도록 하였으며(기술적 대책)⁹⁾, ‘AI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AI디지털교과서 개발·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5)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은 제정안 발의 전에 추진되고 있던 정책으로 필요 예산 중 일부가 '24년 예산에 기편성되어 있어 AI디지털교과서 개발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제정안에 따른 필요·직접적 추가재정소요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동 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향후 예산을 소요하면서 지속·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I디지털교과서 개발과 관련되는 예산계획을 근거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함

6) 참고로 교육부는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제공하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소요예산으로 총 997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다만, 제정안의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과 처리하는 데이터의 성질 및 처리방식이 상이하여 동 예산을 그대로 준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7) 안 제14조에 따른 ‘학습데이터 관리·운영지침’은 기존 예산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따로 계상하지 않음

8) 다만, 교육부제출자료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 보급비’는 검정심사 이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사전추정이 어려우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이를 제외한 비용에 대하여 계상함

9) 이외에도 관련 법에 따라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획득의무가 있다고 함(자료: 교육부)

성 보호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교과서 채택을 위한 검정심사 항목으로 반영하여 기술검정을 수행할 예정(행정적 대책)¹⁰⁾

- (안 제18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4년에 국고 3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에 따른 특별교부금 재원 중 3,818억원을 교원의 AI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에 투입할 예정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디지털기반교육 기본계획’의 경우 디지털기반교육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므로 심의위원회 운영비와 심의 지원을 포함한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회’와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 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현시점에서 구체적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본 추계서에서는 유사사례인 교육부의 ‘디지털기반 교육 자문위원회’를 준용하여 추계함
 - 교육부는 학계, 교육현장,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통한 미래교육 방향 모색을 위하여 2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정책 자문위원회(디지털교육혁신 분과)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제정안은 동 자문위와 다르게 관계 공무원 등도 구성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27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14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이므로 연간 1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 (연간 추가재정소요) 14명×20만원¹¹⁾×1회 = 280만원

10) 이외에도 AI디지털교과서 선정 및 계약시 개인정보보호를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표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및 동의 양식 등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실무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 함(자료: 교육부).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기술적·행정적 대책을 제정안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으로 상정함

11)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를 적용함

-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3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교육부의 최근 3년간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연구용역 현황을 준용
 - 교육부는 최근 3년간 2건의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¹²⁾하였으며, 각 3,000만원을 소요경비로 집행하였으므로 본 추계서에서도 이와 동일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며, 기본계획 수립주기에 맞추어 2025년과 2028년에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디지털기반교육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디지털기반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6조)	32.8	2.8	2.8	32.8	2.8	74	14.8

주: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연구용역비를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소요비용은 ’24년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사업 예산으로 추정¹³⁾
 - (AI디지털교과서 개발 현황)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23.2.23.), 「AI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23.6.8.)을 통해 ’25년도부터 영어·수학·정보·국어(특수)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¹⁴⁾ 23년 9월부터 본격적 AI디지털교과서를 개발 중
 - ※ [참고자료 1] AI디지털교과서 추진계획
 - [참고자료 2] AI디지털교과서 개발 과목 및 적용 일정(안)
 -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예산은 ‘AI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AI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 지원’, ‘학습데이터 플랫폼’, ‘인프라구축’, ‘교원연수’로 구분됨

12) 최근 3년간 디지털기반교육 관련 연구용역 현황

	연구과제명	수행기관	실시연도	계약금액(천원)
1	미래형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전환 및 플랫폼 설계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0	30,000
2	미래형 교과서 모형 및 운영 시스템 제안	한국교원대산학협력단	2021	30,000

자료: 교육부

- 13) 다만, 교육부제출자료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 보급비는 검정심사 이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사전추정이 어려우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이를 제외한 비용에 대하여 계상함
- 14)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23.8.30.),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개정(’23.10.17.), 「AI 디지털교과서 통합인증 및 데이터 수집 API 연계가이드」(’23.12.)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함

- (AI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따른 각종 기술자문, 공공콘텐츠(EBS 등) 제공, 보안인증(CSAP) 컨설팅, 프로토타입 개발 등 차년도 교과 개발 준비 등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과 완성도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기술심사시스템 및 도입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정·보완시스템¹⁵⁾을 구축·운영
- (AI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 지원) 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검정심사 운영을 위해 심사 운영비 일부를 지원
- (학습데이터 플랫폼) 개별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된 학습데이터를 축적·분석·활용하는 학습데이터 저장소 구축·운영
- (인프라 구축) 전국 학교 네트워크 점검·개선 등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지원
- (교원 연수) 교원의 AI디지털교과서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표 3]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 현황(2024년)

(단위: 백만원)

	개발 및 활용지원	검정심사 운영지원	학습데이터 플랫폼구축	인프라구축	교원연수
AI 디지털교과서	16,960 (특별교부금)	886 (국고)	43,401 (특별교부금)	836,742 (특교·국고·지방비)	381,800 (특별교부금)

주: AI디지털교과서 보급비는 검정심사 이후 확정되는 사항으로 위 표에 불포함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AI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등에 소요될 추가재정소요는 아래와 같음
 -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¹⁶⁾에 따라 재원이 총액으로 결정되는 만큼 특별교부금으로 소요될 ‘디지털교과서 개발 예산 등’이 총 재정수요를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국고 및 지방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진행 (예정)될 금액을 추가재정소요로 계상함¹⁷⁾

15) 사용 중 장애 등에 대한 민원 대응, 교과서 수정에 따른 승인 처리 등 수행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표 3]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 등’ 관련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검정심사 운영지원		2,605	2,103	1,100	1,100	—	6,908
인프라구축	국고	10,036	1,635	1,635	1,635	1,635	16,576
	지방비	1,270,815	1,071,018	1,473,734	605,006	681,806	5,102,379
합 계		1,283,456	1,074,756	1,476,469	607,741	683,441	5,125,863

주: 1)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등’은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사업 중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지원, 학습데이터플랫폼구축, 인프라구축(일부), 교원연수 등’ 특별교부금으로 추진 예정된 사업의 소요예산(안)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증액 교부가 실시되거나 사업계획이 변동될 경우 등에는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2) ‘AI디지털교과서 보급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금액이 검정심사 이후 확정되므로 현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움

3)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일정에 따라 검정심사비는 2028년까지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와 현재 추진 중인 ‘AI디지털교과서’사업을 기반으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특별교부금 사용 사업으로 예정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지원,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인프라구축(일부), 교원연수’ 사업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증액교부가 실시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등에는 추가재정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
- ‘AI디지털교과서 보급비’ 등을 제외한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17) 다만, 이 경우에도 ‘디지털교과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증액교부 등이 실시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참고자료 1] AI 디지털교과서 추진계획

	2023년												2024년												202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검정 실시 공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검정 심사																													
현장 적용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2]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과목 및 적용 일정(안)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초 등 학 교	국정	국어 수학	국어 ③, ④	국어 ⑤, ⑥ 수학 ③, ④	— 수학 ⑤, ⑥	특수교육 기본교육	
	검정	국어 수학		국어 31324142 수학 51526162	국어 51526162 —	공통 교육	
		영어	영어 3, 4	영어 5, 6	—		
		사회		사회 31324142	사회 51526162		
		과학		과학 31324142	과학 51526162		
	인정	학교자율 시간(정보)	정보 3, 4	정보 5, 6	—		
	중 학 교	국정	선택		생활영어 1, 2, 3	정보통신 1, 2, 3	특수교육 기본교육
검정		수학	수학 1	수학 2	수학 3	공통 교육	
		영어	영어 1	영어 2	영어 3		
		정보	정보	—	—		
		국어		국어 1-1, 1-2	국어 2-1, 2-2		국어 3-1, 3-2,
		사회			사회 ①, ②		
		역사			역사 ①, ②		
		과학		과학 1	과학 2		과학 3
기술·가정		기술·가정 ①, ②					
고 등 학 교	국정	선택		생활영어 1, 2, 3	정보통신 1, 2, 3	특수교육 기본교육	
	검정	수학	공통수학	공통수학	—	공통 교육	
		영어	공통영어	공통영어	—		
		정보	정보				
		국어			공통국어		공통국어
		사회			통합사회		통합사회
		역사			한국사		한국사
		과학			통합과학		통합과학
기술·가정		기술·가정					
합계(책)		18책	32책	29책 총 96책	17책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3.6.7.)